

[별표 1] <개정 2018. 12. 20.>

허용물질의 종류 (제3조제1항 관련)

1. 유기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

가. 유기수산물

1) 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

가) 사료원료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나목1)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나목1)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분과 어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수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의 가공부산물 또는 식용으로 어획된 어류의 가공부산물에서 유래된 것

나) 사료 첨가제 등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나목2)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나목2)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

2) 양식 장비나 시설의 청소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

가) 양식생물(수산동물)이 없는 경우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존 식염(염화나트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람의 건강 또는 양식장 환경에 위해(危害)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용할

○ 차아염소산 나트륨	수 없음.
○ 차아염소산 칼슘	
○ 석회(생석회, 산화칼슘)	
○ 수산화나트륨	
○ 알코올	
○ 과산화수소	
○ 유기산제(아세트산, 젖산, 구연산)	
○ 부식산	
○ 과산화초산	
○ 요오드포	
○ 과산화아세트산 및 과산화옥탄산	
○ 차박	○ 새우 양식에 한정함.

나) 양식생물(수산동물)이 있는 경우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○ 석회석(탄산칼슘)	○ pH 조절에 한정함.
○ 백운석(白雲石)	○ 새우 양식의 pH 조절에 한정함.

3) 양식 장비나 시설의 소독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: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양식생물 또는 사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나. 유기가공식품

1)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: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다목1)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여부와 허용범위는 「농림축산식품부

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다목1)를 준용한다.

2) 기구·설비의 세척·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: 1)에 따라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.

2.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

가. 무항생제수산물: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11 제1호아목5)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.

나.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: 양식 장비나 시설의 청소 또는 소독을 위하여 각각 제1호가목2) 또는 3)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.